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이자·배당소득 연 336만원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앞으로는 336만원만 넘으면 부과된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보험료 대상을 늘리기 위해 현재 보험료 부과 대상을 연간 이자·배당소득 336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5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료는 현재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구간에만 부과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건보 가입자의 최저보험료(월 1만9500원) 기준선을 연소득 336만원(과세소득 기준)으로 잡고 있다.

보건당국은 내년에 연구용역과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통해 분리과세 금융소득 부과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내후년에 국민참여위원회 및 국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후 재정 영향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해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는 원래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만 물렸고, 건보 가입자가 주택임대 또는 금융투자 소득이 있어도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근로사업소득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2020년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연 1000만원 이상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작업 착수

국세청은 퇴임공무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공직퇴임 세무사의 수입제한 범위를 규정한 '세무사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개정(양도사무처리 규정 제2장 제10조)를 비롯해 '수정신고서 등의 청구의 처리'개정(양도사무처리 규정 제2장 제11조) 등이다.

우선,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개정(안)은 경정청구서 처

리시 '세무사법시행령'에 따른 공직퇴임 세무사 수입제한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해 제한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조, 제26조에 따른 징계요구와 징계요건 조사보고 등이다.

'수정신고서 등의 청구의 처리' 개정(안)은 기한 후 신고서 처리시 '세무사법시행령'에 따른 공직퇴임 세무사 수입제한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해 제한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때 기한 후 신고의 수정신고서도 포함한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관계자는 "오는 11월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위 1% 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금특례 98% 차지

지난해 6000억원에 달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의 98%를 상위 1% 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4일 지난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전체 공제세액 6009억원 중 5869억원이 104개 상위 1% 기업에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들은 1곳 당 평균 56억원의 공제를 받은 것에 비해 나머지 99% 기업은 1곳 당 7000만원 수준의 공제를 받았다.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원자력·사물인터넷·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은 물론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에서도 전체 공제세액 2조334억원 중 절반인 1조211억원은 상위 1% 기업이 차지했다.

국세청 측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283개 가운데 중견, 중소기업은 46개라며, 대기업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최저한세율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연구개발비 지출이 규모가 큰 기업이 많다고 할지라도, 공제 혜택을 상위 1% 기업이 썬짓둔처럼 모두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중소·중견기업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